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 성 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31
----------	---------

발의연월일 : 2024. 3. 4.

발 의 자 : 박성호, 전철규, 정정희,
최세진, 박주선

1. 제안이유

지방의회 기능·역할이 지속 증대함에 따라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의 상한액을 상향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시행)됨.

「지방자치법」 제40조는 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상향하기로 결정(2024. 2. 28.)하였으므로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상향하여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제2항)

나. 기타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 및 부칙 제2조제2항

나. 비용추계

-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33%, 보조활동비 150% 인상

구분	현행	개정 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90만원	120만원
보조 활동비	20만원	30만원
총액	110만원	150만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12.14.)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고 의정활동비 소급 지급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제2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
2. 보조 활동비: 월 30만 원

제3조 단서 중 “지급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17.11.29, 2018.4.25, 2019.2.20, 2022.2.16., 2023.3.3.)”를 “지급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소급 지급 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3966호, 2023.12.14.)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고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한다.

3.3.3.)

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 ①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②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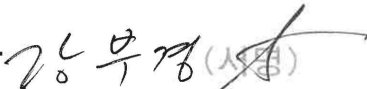
**2024년 ~ 2026년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통지**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 2026년 강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회의장에게 통지합니다.

- 의결일자: 2024. 2. 28.(수)
- 결정사항: 2024년~2026년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 2024년 ~ 2026년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 1,500,000 원

구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합 계
지급기준액	월 <u>1,200,000</u> 원	월 <u>300,000</u> 원	월 <u>1,500,000</u> 원

2024년 2월 28일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강무경 (서명)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시·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군·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부칙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